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460호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7. 12. 2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460호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위생용품 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생용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과 표시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위생용품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 내용

가. 총칙에서 기준의 목적·구성, 용어의 정의, 표시대상 위생용품의 범위를 정함(안 I-1~4)

나. 위생용품의 표시방법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II-1)

1) 판매·대여하는 제품의 최소 단위별 용기 포장에 III.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도록 함(안 II-1-가)

- 2) 표시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도록 하며, 한글로 표시하도록 함(안 Ⅱ-1-나~다)
- 3) 표시사항은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에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며, 정보표시면에는 표시사항별로 표 또는 단락 등으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함(안 Ⅱ-1-라)
- 4) 위생용품의 표시사항에 대한 활자크기를 정함(안 Ⅱ-1-마~바)
- 5) 다른 제조업소의 표시가 있는 용기나 포장을 제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Ⅱ-1-사)
- 6) 시각장애인을 위해 표시사항을 점자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원료명 등 표시사항은 QR 코드 또는 음성변환용 코드를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Ⅱ-1-아~자)
- 7) 내포장, 세트포장, 소분포장하는 경우의 표시방법을 정함(안 Ⅱ-1-차~타)
- 8) 수출하는 위생용품, 위생물수건, 수입 위생용품에 대하여 표시기준 적용 특례사항을 정함(안 Ⅱ-1-파)

다.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을 정함(안 Ⅱ-1-하)

- 1) 주표시면에 “위생용품”이라는 글자를 바탕색상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글상자 안에 표시하도록 함(안 별표-1)
- 2) 제품명, 업체명 및 소재지의 표시방법을 정함(안 별표-2~3)
- 3)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용량 또는 수량(매수, 개수), 길이로 표시하도록 하며, 용기·포장에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

의 허용오차(범위)를 정함(안 별표-4)

4)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의 표시 방법을 정함(안 별표-5, 6)

5) 위생용품의 제조에 사용된 모든 원료 또는 성분을 표시하도록 함
(안 별표-7)

6) 법 제10조에 따른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위생용품의 유형이 분류된 위생용품은 그 유형을 표시하도록 함(안 별표-8)

7)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 재활용에 대한 표시 방법을 정함(안 별표-9~10)

라. 위생용품의 종류별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을 정함(안 Ⅲ)

3. 의견 제출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위생용품·담배관리팀, (전화) 043-719-1740, (팩스) 043-719-171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 호

「위생용품 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제정고시(안)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I. 총칙

1. 목적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위생용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과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이 기준은 총칙, 공통표시기준,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별표]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으로 나눈다.

3. 용어의 정의

가. “제품명”이라 함은 개개의 제품을 나타내는 고유의 명칭을 말한다.

나. “위생용품의 유형”이라 함은 법 제10조에 따른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위생용품의 최소분류단위를 말한다.

다. “제조연월일”이라 함은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가공·위생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포장 후 살균 등과 같이 별도의 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 공정을 마친 시점)을 말한다. 다만, 소분포장하는 제품은 소분용 원료제품의 제조연월일을 말한다.

라. “유통기한”이라 함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마. “원료”라 함은 위생용품의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 내에 들어있는 것을 말한다.

바. “성분”이라 함은 제품에 따로 첨가하거나 원료를 구성하는 단일 물질로서 최종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사. “주표시면”이라 함은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위생용품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을 말한다.
- 아. “정보표시면”이라 함은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사항을 모아서 표시하는 면을 말한다.
- 자. “표시사항”이라 함은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제품명, 업체명 및 소재지, 내용량,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원료명 또는 성분명, 위생용품의 유형 등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에서 위생용품에 표시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말한다.
- 차. “포인트”라 함은 한국산업표준 KS A 0201(활자의 기준 치수)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자의 크기를 표시하는 단위를 말한다.
- 카. “줄간격”이라 함은 문단의 줄 사이 간격 크기로서, 윗줄 글자 제일 아래와 아랫줄 글자 제일 위 사이의 여백을 말한다.

4. 표시대상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제조·가공·소분·수입·위생처리하는 위생용품

5. 규제 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2000년 0월 0일을 기준으로 매 0

년이 되는 시점(매 0년째의 0월 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Ⅱ. 공통표시기준

1. 표시방법

가. 판매·대여하는 제품의 최소 단위별 용기·포장에는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나.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로 인쇄하거나 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를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 1) 제품포장의 특성상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으로 표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 2)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고 위생용품제조업소에서 원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원료용 제품의 경우
- 3) 신고관청에서 변경신고를 수리한 업체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는 경우

다. 표시는 한글로 하여야 하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를 혼용하거나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자나 외국어는 한글표시의 활자와 같거나 작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되는 위생용품과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는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표시 활자보다 크게 표시할 수 있다.

라. 표시사항을 표시할 때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으로 구분하여 바탕색의 색상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다음 각 목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1) 주표시면에는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제품명, 내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표시면에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제품명, 내용량 이외의 사항을 함께 표시한 경우에는 정보표시면에 그 표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 2) 정보표시면에는 업체명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원료명 또는 성분명, 위생용품의 유형, 주의사항 등을 표시사항별로 표 또는 단락 등으로 나누어 표시하되,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 cm² 미만인 경우에는 표 또는 단락 등으로 나누어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표시사항을 표시함에 있어 활자크기는 다음에서 규정한 활자크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1)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제품명, 업체명 및 소재지, 내용량, 제조연월일, 원료명 또는 성분명의 글자 크기는 7포인트 이상이어야 한다.
- 2) 1)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글자 크기는 6포인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

3) 표시사항의 줄간격은 0.5포인트 이상이어야 한다.

바. 목록에도 불구하고 정보표시면의 면적이 이 고시에서 정한 표시사항(다른 법령에서 표시하도록 정해진 사항 포함)만을 표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정해진 활자크기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서 표시사항 및 활자크기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사. 다른 제조업소의 표시가 있는 용기나 포장을 제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생용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용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시중에 유통·판매할 목적이 아닌 다른 회사의 제품의 원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사용되는 유리병(같은 위생용품의 유형 또는 유사한 품목으로 사용된 것에 한한다)의 경우

아.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제품명, 제조연월일 등의 표시사항을 보기 쉬운 위치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자표시는 스티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자. 원료명 등 표시사항은 QR 코드 또는 음성변환용 코드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차. 최소 판매·대여단위 포장 안에 내용물을 내포장한 제품(법 제3조제4항에 해당하는 위생용품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내포장별로 제품명, 업체명, 제조연월일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포장한 제품의 표시사항 및 활자크기는 라목 및 마목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카. 세트포장(두 종류 이상의 각각 다른 제품을 함께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한 제품을 말함) 형태로 구성한 경우 세트포장 제품의 외포장지에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완제품을 구성하는 각 제품의 표시사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위생용품을 소분하여 재포장한 경우 해당 위생용품의 원래 표시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내용량, 업체명 및 소재지를 소분된 사항에 맞게 표시하여야 한다.

파. 다음 각 호의 위생용품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1) 수출위생용품에 대하여는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2)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물수건처리업의 영업신고를 하여 위생처리하는 위생물수건에는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업체명 및 소재지, 위생처리일자만을 표시할 수 있다.
- 3) 수입위생용품에 대한 표시방법

- 가) 수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생용품의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있어야 하고, 한글이 인쇄된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원래의 용기·포장에 표시된 제품명, 원료명 또는 성분명,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 주요 표시사항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
- 나) 한글로 표시된 용기·포장으로 포장하여 수입되는 위생용품의 표시사항은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다) 수출국 제조업체의 표시는 한글표시 스티커에 해당 제품 수출국의 언어로 표시할 수 있다.
- 라) 자사제품 제조·가공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위생용품은 제품명, 제조업체명과 제조연월일만을 표시할 수 있고, 그 위생용품에 수출국의 언어 등으로 된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마)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위생용품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관광사업용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하. 위생용품의 개별표시사항은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별표]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한다.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세척제

가.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나. 제품명

다. 업체명 및 소재지

라. 내용량

- 중량, 용량 또는 수량

마. 제조연월일

바. 성분명

사. 위생용품의 유형

- 1종 세척제, 2종 세척제, 3종 세척제

아.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자.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제3. 개별기준 및 규격에 규정된 사용기준을 표시
- 제품별 표준사용농도와 사용방법을 표시

차. 기타 표시사항

- 1종 세척제는 “야채, 과일 등 세척용”, 2종 세척제는 “음식기, 조리기구 등 식품용 기구 세척용”, 3종 세척제는 “식품의 제조·가공용 기구 등 세척용” 표시

2. 행굼보조제

가.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나. 제품명

다. 업체명 및 소재지

라. 내용량

- 중량, 용량 또는 수량

마. 제조연월일

바. 성분명

사. 위생용품의 유형

아.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자.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

- 제품별 표준사용농도와 사용방법을 표시

3. 위생물수건

가.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나. 업체명 및 소재지

다. 위생처리일자

4. 일회용 컵

가.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나. 제품명

다. 업체명 및 소재지

라. 내용량

- 수량

마. 제조연월일

바. 재질명

사. 위생용품의 유형

아.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5. 일회용 손가락

가.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나. 제품명

다. 업체명 및 소재지

라. 내용량

- 수량

마. 제조연월일

바. 재질명

사. 위생용품의 유형

아.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6. 일회용 젓가락

가.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나. 제품명

다. 업체명 및 소재지

라. 내용량

- 수량

마. 제조연월일

바. 재질명

사. 위생용품의 유형

아.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7. 일회용 포크

가.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나. 제품명

다. 업체명 및 소재지

라. 내용량

- 수량

마. 제조연월일

바. 재질명

사. 위생용품의 유형

아.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8. 일회용 나이프

가.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나. 제품명

다. 업체명 및 소재지

라. 내용량

- 수량

마. 제조연월일

바. 재질명

사. 위생용품의 유형

아.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9. 일회용 빨대

가.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나. 제품명

다. 업체명 및 소재지

라. 내용량

- 수량

마. 제조연월일

바. 재질명

사. 위생용품의 유형

아.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10. 화장지

가.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나. 제품명

다. 업체명 및 소재지

라. 내용량

1) 두루마리형 : 너비 및 길이(겹)

2) 기타 : 가로, 세로 및 매수(겹)

마. 제조연월일

바. 원료명

사. 위생용품의 유형

- 화장실용 화장지, 미용 화장지

아.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자. 재활용에 대한 표시

11. 일회용 행주

가.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나. 제품명

다. 업체명 및 소재지

라. 내용량

1) 두루마리형 : 너비 및 길이(겹)

2) 기타 : 가로, 세로 및 매수(겹)

마. 제조연월일

바. 원료명

사. 위생용품의 유형

아.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자. 재활용에 대한 표시

12. 일회용 타월

가.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나. 제품명

다. 업체명 및 소재지

라. 내용량

1) 두루마리형 : 너비 및 길이(겹)

2) 기타 : 가로, 세로 및 매수(겹)

마. 제조연월일

바. 원료명

사. 위생용품의 유형

- 키친타월, 핸드타월

아.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자. 재활용에 대한 표시

13. 일회용 종이냅킨

가.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나. 제품명

다. 업체명 및 소재지

라. 내용량

1) 두루마리형 : 너비 및 길이(겹)

2) 기타 : 가로, 세로 및 매수(겹)

마. 제조연월일

바. 원료명

사. 위생용품의 유형

아.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자. 재활용에 대한 표시

14.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가.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나. 제품명

다. 업체명 및 소재지

라. 내용량

- 수량

마. 제조연월일

바. 원료명 및 성분명

사. 위생용품의 유형

아.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15. 일회용 이쑤시개

가.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나. 제품명

다. 업체명 및 소재지

라. 내용량

- 수량

마. 제조연월일

바. 재질명

사. 위생용품의 유형

아.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16. 일회용 면봉

가.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나. 제품명

다. 업체명 및 소재지

라. 내용량

- 수량

마. 제조연월일

바. 원료명

사. 위생용품의 유형

- 성인용 면봉, 어린이용 면봉

아.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

- 어린이용의 경우, “영·유아의 귀, 코 안쪽 깊이 넣지 마십시오”, “영·유아가 직접 사용하지 않게 하십시오”의 문구 표시

17. 일회용 기저귀

가.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나. 제품명

다. 업체명 및 소재지

라. 내용량

- 수량

마. 제조연월일

바. 원료명 및 성분명

- 안감, 흡수층, 방수층, 고정(테이프)에 사용된 원료와 성분의 명칭을 구분하여 표시

사. 위생용품의 유형

- 1) 성인용 기저귀(팬티형, 테이프형, 일자형)
- 2) 어린이용 기저귀(팬티형, 테이프형, 일자형, 기저귀라이너)
- 3) 성인용 위생깔개(매트)
- 4) 어린이용 위생깔개(매트)

아.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자. 적용대상

- 성인용 기저귀는 허리둘레길이를 “00~00 cm” 등의 범위로 표시
- 어린이용 기저귀는 크기에 따라 사용가능한 표준체형의 유아 및 어린이 체중을 “00~00 kg” 등의 범위로 표시
- 신체치수에 의해 제품을 구분하지 않는 위생깁개(매트) 등 제품의 경우 적용대상을 “전 성인”, “전 유아 및 어린이용”으로 표시

(예시) 체중(유아), 허리둘레(성인)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제조·가공·소분·수입(선적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위생처리하는 위생용품에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월 18일까지 제조·가공·소분·수입·위생처리하는 위생용품의 표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별표]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1.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위생용품은 주표시면에 “위생용품”이라는 글자를 바탕색상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글상자 안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제품명

가. 제품명은 그 제품의 고유명칭으로 표시한다. 다만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 또는 제8조에 따른 수입신고로 한 위생용품은 신고관청에 보고 또는 신고한 명칭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제품명은 상호·로고 또는 상표 등의 표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3. 업체명 및 소재지

가. 위생용품제조업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영업신고증에 기재된 업체명(상호)과 소재지를 표시하되, 업체의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바목 2)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자가 다른 위생용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위생용품을 제조한 경우에는 위탁을 의뢰한 업체명 및 소재지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위생물수건처리업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영업신고증에 기재된 업체명(상호)과 소재지(또는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바목 2)에 따라 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 다른 위생물수건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위생물수건을 위생처리한 경우에는 위탁을 의뢰한 업체명 및 소재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위생용품수입업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영업신고증에 기재된 업체명(상호)과 소재지(또는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하되, 해당 수입 위생용품의 제조업체명을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체명이 외국어로 표시되어 있으면 한글로 따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시) 수입업소 : 업체명, 소재지
제조업소 : 업체명

라. 위생용품수입업소에서 수입한 위생용품을 단순히 소분하여 재포장하는 위생용품제조업소의 경우 위생용품제조업소의 업체명(상호)과 소재지(또는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 수입신고한 해당 제품 원료의 해외 제조업체명을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제조(소분)업소 : 업체명, 소재지
제조(수출)업소 : 업체명

마. 유통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자가 다른 위생용품제조업소에서 제조한 위생용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생용품제조업소와 판매자의 업체명(상호)과 소재지(또는 반품

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제조업소 : 업체명, 소재지
판매업소 : 업체명, 소재지

4. 내용량

가.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용량 또는 수량(매수, 개수), 길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화장지, 일회용 행주, 일회용 타월, 일회용 종이냅킨의 수량은 다음에 따라 표시한다.

1) 제품 형태에 따라 너비 및 길이를 표시하고 그 옆에 (겹)을 표시하거나, 가로, 세로 및 매수를 표시하고 그 옆에 (겹)을 표시한다.

(두루마리형) 치수 : 00 mm (너비) x 00 m (길이) (겹)
(기타) 치수 : 00 mm (가로) x 00 mm (세로)
매수 : 매(겹)

2)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할 때에는 1)의 표시사항과 함께 포장된 수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용기·포장에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범위)는 다음과 같다.

적용분류	표시량	허용부족량
중량 또는 용량	50 g(ml) 이하	9 %
	50 g(ml) 초과 100 g(ml) 이하	4.5 g(ml)
	100 g(ml) 초과 200 g(ml) 이하	4.5 %
	200 g(ml) 초과 300 g(ml) 이하	9 g(ml)
	300 g(ml) 초과 500 g(ml) 이하	3 %
	500g (ml) 초과 1 kg(l) 이하	15 g(ml)
	1 kg(l) 초과 10 kg(l) 이하	1.5 %
	10 kg(l) 초과 15 kg(l) 이하	150 g(ml)
	15 kg(l) 초과 50 kg(l) 이하	1 %
길이	5 m 이하	허용하지 않음
	5 m 초과	표시량의 2 %
수량	50 개(매) 이하	허용하지 않음
	50 개(매) 초과	표시량의 1 %를 반올림한 정수값

* %로 표시된 허용부족량(오차)은 표시량에 대한 백분율임

* 두루마리(롤)의 길이 및 그 허용오차 규정은 2겹 이상 겹친 두루마리인 것에 대하여는 겹친 대로 적용함

5. 제조연월일

가. 제조연월일은 “○○년○○월○○일”, “○○.○○.○○.”, “○○○○년○○월○○일” 또는 “○○○○.○○.○○.”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제조연월일을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위치에 제조연월일의 표시 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 수입되는 위생용품에 표시된 수출국의 제조연월일의 “연월일”의 표시순서가 가목의 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

도록 “연월일”의 표시 순서를 예시하여야 하며, “연월”만 표시되었을 경우에는 “연월일” 중 “일”의 표시는 제품의 표시된 해당 “월”의 1일로 표시하여야 한다.

6. 유통기한

- 가. 유통기한은 “○○년○○월○○일까지”, “○○.○○.○○.까지”, “○○○○년○○월○○일까지”, “○○○○.○○.○○.까지” 또는 “유통기한: ○○○○년○○월○○일”로 표시하여야 한다.
- 나. 제조연월일을 사용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일까지”, “제조일로부터 ○○월까지” 또는 “제조일로부터 ○○년까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일”로 표시할 수 있다.
- 다. 유통기한을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위치에 유통기한의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 라. 수입되는 위생용품에 표시된 수출국의 유통기한의 “연월일”의 표시순서가 나목의 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연월일”의 표시순서를 예시하여야 하며, “연월”만 표시되었을 경우에는 “연월일” 중 “일”의 표시는 제품의 표시된 해당 “월”의 1일로 표시하여야 한다.
- 마. 유통기한 표시가 의무가 아닌 국가로부터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수입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수입자는 제조국, 제조회사로부터 받은 유통기한에 대한 증명자료를 토대로 하여 한글표시사항에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한다.

바. 유통기한의 표시는 사용 또는 보존에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경우 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사. 유통기한이 서로 다른 각각의 여러 가지 제품을 함께 포장하였을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짧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한다.

7. 원료명 또는 성분명

가. 위생용품의 제조에 사용된 모든 원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원료명 또는 성분명은 법 제10조에 따른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표준국어대사전 등을 기준으로 대표명을 선정한다.

다. 원료명 또는 성분명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해당 원료명 또는 성분명 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라. 위생용품의 제조과정 중 첨가되어 최종제품에서 불활성화되는 효소나 제거되는 원료·성분의 경우에는 그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재질명을 표시하는 경우 합성수지제는 염화비닐수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폴리염화비닐리덴,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페놀수지, 실리콘 고무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약자로 표시할 수 있다.

8. 위생용품의 유형

법 제10조에 따른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위생용품의 유형

이 분류된 위생용품은 그 유형(「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유형이 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의 종류를 말한다)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생용품의 유형을 제품명이나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때에는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

사용 및 보관상 주의가 필요한 제품은 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0. 재활용에 대한 표시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 “본 제품은 자원재활용을 위해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입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에 따른 종이제 또는 가공지체를 재생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